

##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제정	1996. 1. 11	규칙 제 640호
개정	1996. 3. 12	규칙 제 647호
	1996. 10. 29	규칙 제 670호
	1998. 9. 23	규칙 제 722호(직제규칙)
	2002. 2. 16	규칙 제 801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3. 4. 11	규칙 제 817호
	2003. 12. 23	규칙 제 828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4. 6. 25	규칙 제 834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8. 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	2009. 10. 30	규칙 제 976호
일부개정	2010. 6. 8	규칙 제 989호
일부개정	2010. 12. 15	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1. 12. 26	규칙 제1023호
일부개정	2011. 12. 26	규칙 제1024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2. 6. 1	규칙 제1038호
일부개정	2018. 7. 31	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	2020. 6. 19	규칙 제1233호
일부개정	2021. 12. 23	규칙 제1264호
일부개정	2023. 5. 16	규칙 제1280호
일부개정	2023. 9. 18	규칙 제1284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19]

제2조(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) ① 광명시청(이하 “시청”이라 한다) 및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. <개정 2011. 12. 26, 2020. 6. 19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. <개정 2011. 12. 26, 2020. 6. 19, 2021. 12. 23>

1. 시청 소속 관용자동차
2. 직속기관·사업소·동직원 및 타기관의 자동차중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(공무수행을 위한 본청 공무원의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 이용을 포함한다)
3. 광명시 주관 행사에 동원되는 자동차

4. 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
5. 본청 실·과, 광명시민회관,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의회에서 별표 1에 따른 방문부서 확인인을 받은 자동차
6.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·도·시의원 자동차
7.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자동차
8.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 표지(스티커 등)를 부착한 차량(다만,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정한다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,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. <개정 2020. 6. 19, 2023. 5. 16, 2023. 9. 18>

1. 「자동차 관리법」에 따른 경형 자동차: 50퍼센트
2.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: 50퍼센트
3. 「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등록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: 50퍼센트
4.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: 50퍼센트(다만,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한다)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9.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(G3PLUS, 경기아이플러스카드, 주민등록표등본 등)를 제시하는 사람: 두 자녀 가정(50퍼센트), 세 자녀 이상 가정(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)
10. 전기자동차: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
11.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제(요일제 포함)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: 20퍼센트
12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: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

[전문개정 2011. 12. 26]

제3조(무료주차권 발부)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한정하여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을 발부할 수 있다. 다만, 시청의 경우 주차장 수용능력을 감안 무료주차권은 50대에 한정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, 출입 자동차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전·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 시에는 시간요금을 징수한다. <개정 2003. 4. 11, 2011. 12. 26, 2020. 6. 19>

② 각종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사 참여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, 2020. 6. 19>

③ 시장은 행사당일 행사참여자동차가 많아 시청주차장 내에 수용할 수 없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유가 예상될 경우 임시주차장을 운용할 수 있다. 단, 임시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④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하고자

할 경우 주차장 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9>

제4조(주차권의 제한)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월정기권과 시간주차권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, 월정기권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주차 자동차가 많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자동차 부채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4. 11, 2010. 6. 8, 2011. 12. 26, 2020. 6. 19>

1. 시청 소속 공무원
2. 시청 또는 별관 및 광명시민회관 내 입주한 단체 임직원

[제목개정 2010. 6. 8]

제5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시청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,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.

②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한다. 다만, 각종 행사나 명절기간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개방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주차수요·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]

제6조(주차시간 산정) ① 시간요금은 시청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시부터,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후 1시간은 무료, 입차후 2시간 30분까지는 500원을 징수하고 그 후부터, 각각 출차시간까지를 산정한다. <개정 2003. 4. 11, 2010. 6. 8, 2011. 12. 26, 2012. 6. 1>

②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, 30분 미만 시에는 30분 요금을, 30분 초과 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10. 6. 8, 2011. 12. 26>

③ 삭제 <2010. 6. 8>

④ 삭제 <2003. 4. 11>

제7조(주차요금 징수방법) 시청 및 광명시민체육관의 주차장(이하 “주차장”이

라 한다)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시간주차와 월정기주차로 구분하고,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한다. <개정 96. 3. 12, 2002. 2. 16, 2003. 4. 11, 2010. 6. 8, 2011. 12. 26, 2020. 6. 19>

1. 관리인은 제2조 각 호를 확인한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 후 출차시킨다.
2.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는 1시간 초과 이용 민원인에게 민원인확인대장(별지 제1호 서식)에 기재 후 무료주차권에 방문부서 주차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3. 월정기권은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다.
4. 월정기권의 이용자가 주차권 이용 중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30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기간 중 자동차의 수리·검사 또는 휴가·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5. 시청의 시간요금 계산 중 운영시간 이후의 출차 자동차는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,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자동차는 오전 9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하되 불법 주차자동차가 많아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6. 광명시민체육관의 월정기주차권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발행한다. 다만,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5조의 주·야간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월단위 기간동안 일정한 시간(일 15시간 이내)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간이나 야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인의 지정) ①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시간(광명시민체육관은 주간. 이하 같다)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2. 16>

제9조(운영시간이외의 관리) ①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자동차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

후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② 당직자는 미출차 자동차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③ 익일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관리인은 시금고 마감 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시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익일 업무개시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하여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)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(별지 제4호 서식)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② 자동차 소유주가 이동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,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26>

③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.

[제목개정 2011. 12. 26]

제12조(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)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20. 6. 19]

제13조(주차장 관리) 주차장 관리인은 「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, 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4. 11, 2008. 6. 16, 2020. 6. 19>

제14조(이용자 준수사항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

정 2011. 12. 26, 2020. 6. 19)

1.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.
2. 주차장 이용 시 열쇠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보관한다.
3. 주차장의 만차 시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자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주차거부)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26, 2018. 7. 31>

1.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
2.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
4.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
5.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#### 부칙

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10. 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2. 2. 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3. 4. 1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03. 12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0. 30 규칙 제97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6. 8 규칙 제98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실·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“광명시설내체육관장”을 “광명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“광명시설내체육관장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 결재란 중 “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하단 중 “실내체육관장(인)”을 삭제한다.

㉖ 부터 ㉔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12. 26 규칙 제102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2. 26 규칙 제1024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각각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각각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실내체육관”을 “광명시민체육관”으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2012. 6. 1 규칙 제103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6. 19 규칙 제123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3 규칙 제126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5. 16 규칙 제1280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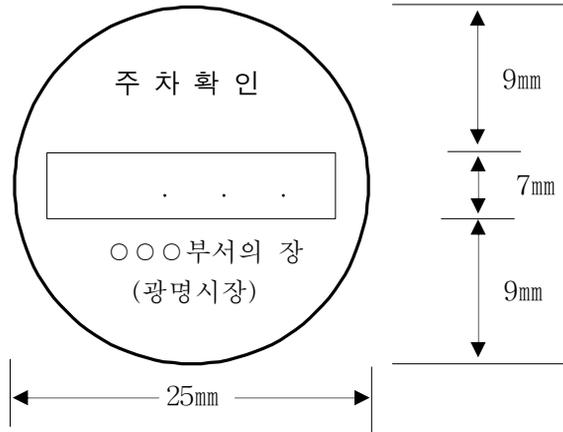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9. 18 규칙 제1284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0. 12. 15>

방문부서 확인인



[별표 2] <개정 2011. 12. 2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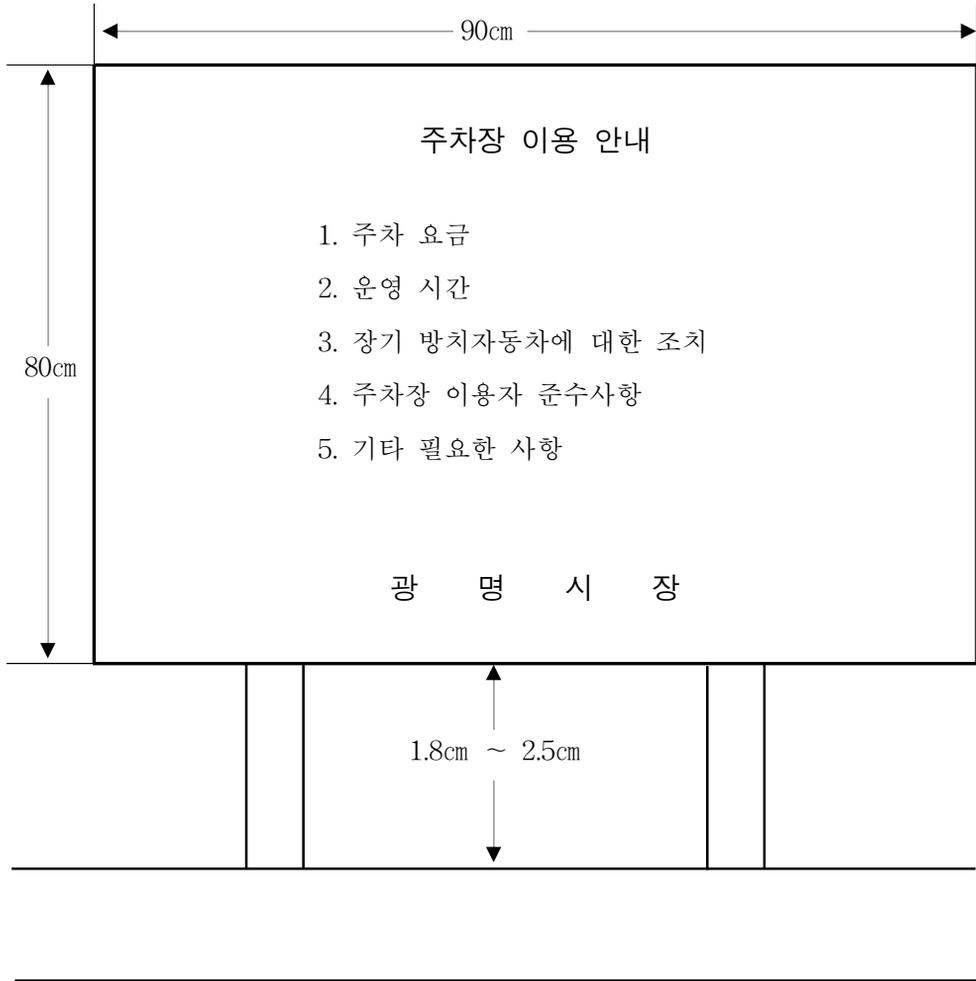
무 료 주 차 권				
자동차번호	방 문 목 적	업무종료 시 간	담당자 확 인	주차확인

※ 업무 종료시간 15분 이내 출차하시기 바랍니다.  
15분 초과 후 출차시에는 시간요금이 부과됩니다.

부서의 장

[별표 3] <개정 2011. 12. 26>

### 주차장 안내 표지판



○ 재 료 : 알미늄판

○ 색 채 :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(고딕)



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1. 12. 26>

일 일 결 산 서

일 자 :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

주차표(주차영수증) 수불 현황

결 재	○	○	○

시 간 주 차 권				정 기 권			
제작매수	사 용 분		잔 매	제작매수	사 용 분		잔 매
	금 일	누 계			금 일	누 계	

주차요금 수납 현황

구 분	출 입 자 동 차 총 계	면 제 자 동 차			징 수 자 동 차	
		민 원 인 (1시간 이내)	민 원 인 (1시간 초과)	타 기 관 공무원등	대 수	금 액
일 계						
누 계						

인계인수사항

구 분	미출차 자동차 영수증	수납된 주차요금	관 리 인	당 직 원
야 간	매 원	원	(인)	(인)
익일 오전	매 원	원	(인)	(인)

방치자동차 이동

자 동 차 번 호	들어온 시간	이 동 일 시	주 차 요 금	비 고



[별지 제4호 서식] <개정 2011. 12. 26>

###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

(No:            )

자동차 번호:

들어온 시간: 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(    시    분)

48시간경과시점: 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(    시    분)

위 자동차는 48시간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「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.

주 차 영 수 증  
첨 부 란

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

결	팀 장	과 장
재		

\_\_\_\_\_ 절            취            선 \_\_\_\_\_

(No:            )

### 이 동 의 퇴 서

아래 자동차는 광명시부설주차장 내에서 48시간 이상 무단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사무소에 이동·보관을 의뢰합니다.

자동차 번호:

들어온 시간: 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(    시    분)

이동의퇴시간: 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(    시    분)

받아야할 주차요금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

광 명 시 장 (인)